



제 945 호

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0- 1324호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고지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2
○ 공고 제2010- 13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공고 제2010- 13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공고 제2010- 1346호	물품구매(암물트럭) 전자입찰 공고	20
○ 공고 제2010- 13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공고 제2010- 135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34
○ 공고 제2010- 1358호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0년 4063 ~ 8739)	49
○ 공고 제2010- 1360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3
○ 공고 제2010- 136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25호선, 소3-2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77
○ 공고 제2010- 136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경신지구 소로3-1호선 도로개설 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79

고 시

○ 고시 제2010- 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2
-----------------	---	----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3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 남동구 만수동 정진섭 외 4인
- 공 고 기 간 : 2010. 10. 18. ~ 2010. 11. 01.(15일간)
- 공 고 내 용 :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사고지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접수일자	위 반 사 항				업체명 운전자	행정 처분	법적근거
	일시	장소	차량번호	신고내용			
2010. 07.22	10.07.11 10:58~ 11:07	송내 남부역	인천30바5737	장기정차여객 유치	정진섭	과태료 1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2010. 08.16	10.08.07 10:23~ 10:35	송내 남부역	인천32바1989	장기정차여객 유치	김세겸	과태료 1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2010. 08.24	10.08.13 15:35~ 15:45	송내 남부역	인천30바7339	장기정차여객 유치	안영근	과태료 1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2010. 08.24	10.08.17 14:53~ 15:01	송내 남부역	인천30바3941	장기정차여객 유치	하상수	과태료 1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2010. 09.01	10.08.23 10:50~ 10:56	송내 남부역	인천32바1989	장기정차여객 유치	김세겸	경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2010. 09.01	10.08.27 10:59~ 11:06	송내 남부역	인천30바5089	장기정차여객 유치	장일웅	과태료 1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1.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사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미수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고지서 수령대상자께서는 납부기일 2010.11.04.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453-2912)로 오셔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 농협 또는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3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단순·교부민원 수수료 항목을 전국적 통일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적용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 1건 3,000원 → 800원
-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 승인) 신청 : 1건 4,500원 → 1,000원
- 어업권원부 열람 신청 : 1건 2,5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 등(초)본 교부신청 : 1건 2,500원 →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건 800원(신설)

나. 그 밖에 별표 1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열람 등 조문을 정비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633 남동구청 세무1과 / 전화 : 032-453-2363,
FAX : 032-453-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사실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2) 휴 · 폐업사실증명	1건	5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3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800원	
< 삭 제 >			
4. 회계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증명	1통	300원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300원	
(3) 건설공사(용역) 기성실적 증명	1통	300원	
5.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필지	800원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4) 기타 시설 ·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5)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인가 · 허가 · 신고 · 신청 · 등록 · 지정 ·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건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1건	600원	
(3)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원	
(4) 법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30,000원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1건	<u>800원</u>	
(6)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1건	6,000원	
(7)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2) 공연장 변경 등록	1건	10,000원	
(3)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4)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1건	10,000원	
(5) 게임제공업 허가	1건	25,000원	
(6) 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1건	15,000원	
(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8)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1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11)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5,000원	
(12)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1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17)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1건	25,000원	
(18)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원	
(19)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0)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21) 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22)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원	
(2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원	
(24)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25)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1건	신고 30,000원 변경 10,000원	
(2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28)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	1건	20,000원	
(29)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1건	10,000원	
(30)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31)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1건	20,000원	
(32)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건설 및 도시계획관계			
(1) 사도개설허가	1건	500원	
(2)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3)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4)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5)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6)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7)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300원	
(8) 환경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300원	
(9) 환지예정지 변경(분할, 합병)신청	1필지	300원	
(10)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1건	500원	
(11) 도시계획선 명시도	1필지	5,000원	
(12) <u>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열람</u>			
가. 일반발급	1필지	1,000원	
※ <u>칼라 발급</u>	1필지	1,500원	
나. 열람	1필지	100원	
4. 보건사회관계			
(1)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병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4)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5)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6)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건	10,000원	
5. 공중위생관계			
(1) 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	5,500원	
(2)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3) 위생처리업 신규	1건	6,000원	
(4) 위생처리업 변경	1건	3,500원	
(5) 세척제 제조업 신규	1건	20,000원	
(6) 세척제 제조업 변경	1건	10,000원	

(7)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1건	6,000원	
(8)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건	3,500원	
(9) 기타			
6. 수산업관계			
(1)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2)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8,000원	
(3)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5,500원	
(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원	
(6)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600원	
(7) 어업신고	1건	1,600원	
(8)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	1건	1,500원	
(9)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0) 어업면허신청	1건	6,000원	
(11) 어업면허연장허가 신청	1건	6,000원	
(12) 어업권(지분)이전 인가신청	1건	5,500원	
(13) 어업권분할 인가신청	1건	5,500원	
(14) 어업권변경 인가신청	1건	4,500원	
(15)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 승인) 신청	1건	1,000원	
(16)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5,500원	
(17) 면허우선순위 결정 신청	1건	1,000원	
(18) 면허신청기간의 연장 신청	1건	1,000원	
(19) 어업재개신고	1건	1,000원	
(20)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해제 허가 신청	1건	1,500원	

(21)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22) 어업권원부 열람 신청	1건	800원	
(23) 어업권원부 등(초)본 교부신청	1건	800원	
(24)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	1건	1,600원	
(25)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26) 수산물가공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27) 수산물가공업 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2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7.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	1건	6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3)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1건	6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8. 농업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3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2010. 12.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구세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 수혜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이관 제외된 감면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1.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기 위하여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 항목에 대하여 조문을 전면 정비 함(안 제2조,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 1. 1일부터 개편된 지방세 세목 체계에 맞추어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함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다.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3조)
- 라.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정비함
(안 제6조)

마.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이 지식 산업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633 남동구청 세무1과 / 전화 : 032-453-2363, FAX : 032-453-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 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인천메트로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까지의 규정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 2부터 제2호의7까지의 규정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보 칙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준용한다.

제1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346호

물품구매(암롤트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폐토사 운반용 암롤트럭 구입』
 - 나. 품 명 : 쓰레기수거용 트럭 1대
 -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라. 규 격 : 지방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마. 추정가격 : ₩127,272,273<부가세 별도>
 -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0. 10. 21(목) 15:00 ~ 2010. 10. 29(금) 15:00**
 -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10. 10. 29(금) 16:00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차. 발주부서 및 담당자 : 청소과 태영은(☎032-453-2554)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0.07.01.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8자리 25101990)**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당해 입찰품목의 제작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당해 물품(암롤트럭)에 대한 **형식승인서 또는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 방식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방식이며, 일반경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전자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자격심사시 제출서류

- 가. 입찰일전일(2010.10.28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당해물품에 대한 형식승인서 또는 기술검토서 사본 1부, 제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원 등) 사본 1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등기우편(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청 5층 경영재정과), 팩스(032-453-2269)제출 등. 단, 제출 후 입찰일전일까지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032-453-2266)에게 확인을 하여야 하며 미도착,훼손,지연,미접수 등의 책임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 등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청소과 태영은(☎ 032-453-2554),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경리팀 담당 최현철(☎ 032-453-2266)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3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현행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3개의 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고,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에 따른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에 의한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면허세와 취득 무관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는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재산세의 세율, 중과세대상지역, 재산세(중전 도시계획세)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및 과세특례의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 라.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 1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633 남동구청 세무1과, 전화 : 032-453-2363, FAX : 032-453-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가.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나.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다.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라.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마.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3.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나.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 건당 3천원

제6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 종류·연식·용도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율	45,000원	36,000원	27,000원	18,000원	12,000원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재산세

제10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과세특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4조(납기) ①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

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고충민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7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8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주민세(재산분)

제22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제24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5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35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현행 「지방세법」이 2011. 1. 1일부터 3개의 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동구 구세조례 중 총칙 분야와 남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중 체납 처분 등 일부 조문을 통합하여 구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 함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구세 세목,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및 서류송달의 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 징수 순위, 미납 구세의 열람, 구세 환급금, 징수유예 신청 및 처리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 라. 재산의 압류, 공매,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등 체납처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 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소집,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 함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 1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633 남동구청 세무1과 전화 : 032-453-2363, FAX : 032-453-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구세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재산분)
4.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통우편 송달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통상우편으로 송달하였을 경우에 비치하여야 하는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의 명의로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구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인천광역시세, 구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구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7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9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0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구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중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구세확정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구청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4조(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채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제2절 처분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채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채납된 구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 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금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구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채납처분비·가산금·구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채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채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9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채납처분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중지기간 중 구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채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채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구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구세 채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채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구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구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채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구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

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구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구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구청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에 따른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3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박상기 외 332건
- 공고기간 : 2010. 10. 21 ~ 2010. 11. 05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0년 4063 ~ 8739)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별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손해보험팀(☎032- 453-2925, 2926 FAX : 032-453-29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010년 장기미(지연)가입자 부과예고서 반송자 명단 (4063~8739)

연번	접수번호	차량번호	납부자명	우편번호	주소	등기번호	배달결과일자	배달결과	사유	비고
1	00004098	05머6883	박상기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0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2	00004136	11거8816	(주)대성퍼니처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6907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3	00004170	22도9596	노은양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08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4	00004184	25나3027	유경호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09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5	00004242	27루7413	박재덕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6910	2010-10-18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6	00004296	39누5712	김경한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691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7	00004336	52노2937	(주)재키토탈스포츠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12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8	00004340	52도7908	이해성	220-080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444202686913	2010-10-20	보관	수취인부재	장기미가입
9	00004464	65로8842	홍영옥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14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10	00004518	79러6223	임용섭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691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11	00004538	86거2664	김재덕	459-120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1444202686917	2010-10-15	보관	수취인부재	장기미가입
12	00004576	86소1672	이상경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18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13	00004596	86어1045	(주)더원종합건설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19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14	00004638	98구4459	명성산업개발(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22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15	00004662	인천30다9716	서해금속공업(주)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6924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6	00004701	인천32가4160	(주) 디.아이.씨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6925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7	00004715	인천33머9297	기독교교육방송(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26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18	00004719	인천34고4365	이주일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6927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9	00004731	인천34로4297	김경호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2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20	00004735	인천35너6664	강원선	403-1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444202686929	2010-10-14	보관	주소불명	장기미가입
21	00004770	인천7러1063	동남실업(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31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22	00004784	인천81나2434	김종현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33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23	00004802	인천부평마2042	오경열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3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24	00004860	04소3431	(주)삼원종합컨설팅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36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25	00004872	06부2480	장기숙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37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26	00004906	15두2081	최영규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6939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27	00004924	22도9968	태양렌트카(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40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28	00004942	25다8839	곽성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4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29	00004968	26조6717	김동량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42	2010-10-14	보관	주소불명	장기미가입
30	00004982	27마8033	원창호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43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31	00005084	45가7754	NGUYEN VAN HAI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6944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32	00005234	60조7048	송재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4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33	00005326	73부1891	유현옥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47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34	00005406	86서2719	안영수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4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35	00005483	인천31루1414	박정상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52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36	00005517	인천32마8093	김금심외 1인(김재휘)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5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37	00005523	인천33나4750	서향원	402-2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4420268695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38	00005545	인천34러7692	최종구	361-201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분평동	1444202686958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39	00005579	인천80러3707	(주)태아기공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6959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40	00005586	인천81라3756	광양건설(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60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41	00005657	01조5666	이기홍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64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42	00005677	05두7289	(주)삼원종합컨설팅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65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43	00005741	20오1802	태양렌트카(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66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44	00005761	25나3623	안상래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6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45	00005859	37수1528	박경희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6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46	00006029	73모2216	정철곤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7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47	00006065	86노7105	김용식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6975	2010-10-18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48	00006089	86무8810	김화장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77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49	00006186	인천33고3467	정대희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68697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50	00006210	인천3로3183	해성기업(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81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51	00006237	인천80나3255	김용래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6983	2010-10-18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52	00006282	인천남동차4584	안동숙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6986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53	00006314	01무8836	김종혁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88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54	00006316	01무8989	김종태	403-02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44202686989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55	00006330	03소3593	인재홍	405-2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44420268699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56	00006332	03우6395	삼원전자공업(주)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6991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57	00006414	20라5806	신희성	401-020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1444202686992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58	00006478	28머7860	안상록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93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59	00006550	36너5889	김춘근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6995	2010-10-18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60	00006582	38다6053	이성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699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61	00006606	40부7136	이승곤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699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62	00006618	43서2695	(주)원광하이테크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6998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63	00006712	52모9386	김중명외1인(김미경)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699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64	00006748	56라4942	박정환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00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65	00006858	86라2720	하니건설 (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04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66	00006927	인천1거7176	박민순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7006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67	00006943	인천30라9863	백영현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0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68	00006965	인천31루8563	박영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0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69	00007016	인천35거2141	장호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0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70	00007065	인천81라4195	조현국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11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71	00007069	인천83나1191	(주)하나푸드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12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72	00007228	22도9179	태양렌트카(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16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73	00007242	25나5958	삼성토건(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18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74	00007294	33저2700	안창익, 장성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1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75	00007402	46라8650	남장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2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76	00007522	61모9422	김총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2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77	00007590	73보2016	김영훈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2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78	00007592	73보2959	이주열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26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79	00007636	86노4850	(주)미지사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027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80	00007650	86러4075	유길준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28	2010-10-14	보관	주소불명	장기미가입
81	00007658	86러6213	심혁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029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82	00007678	86소5180	이용상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3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83	00007706	87모1241	유승연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3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84	00007722	인천30고2413	유철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33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85	00007750	인천31노2375	이선애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034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86	00007756	인천31루7641	전용오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35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87	00007766	인천32너3465	(주)텔피온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036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88	00007776	인천32더1480	최창국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3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89	00007796	인천33노6381	서승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38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90	00007818	인천70가5665	송영섭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3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91	00007822	인천70거3226	박춘호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41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92	00007859	인천80더2319	김광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4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93	00007861	인천80더5105	(주)기성산기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043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94	00007889	인천82나4945	정시영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4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95	00007921	인천남동차4651	이일형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4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96	00007937	인천부평마6851	김광섭	472-821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444202687047	2010-10-15	보관	수취인부재	장기미가입
97	00007946	59너3884	박순례	153-0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44420268704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98	00007954	01도9875	(주)삼원종합컨설팅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49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99	00007964	03부8787	진영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50	2010-10-18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100	00008010	09두2086	(주)삼원종합컨설팅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51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101	00008036	13고6973	주식회사 엠씨아이테크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53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02	00008104	20부3425	이승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5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103	00008110	24더2259	김동화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057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04	00008114	25가2239	김기범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58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05	00008118	25가7234	랩코리아주식회사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59	2010-10-20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106	00008160	27너9712	송강종합건설(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61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07	00008232	39누6338	심상혁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062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108	00008495	86머1739	(주)삼원종합컨설팅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66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109	00008576	인천30고8793	(주)이지애플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67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110	00008578	인천30고9121	이천석	302-150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1444202687068	2010-10-20	보관	수취인부재	장기미가입
111	00008582	인천30루3292	한광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6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112	00008651	인천35더3303	김정남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7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113	00008653	인천35라7798	대신개발(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72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14	00008655	인천3너6866	동남목재공업(주)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073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미가입
115	00008657	인천3도3837	김동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74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16	00008684	인천72나4829	김민규	426-16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이동	1444202687076	2010-10-15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117	00008690	인천7로7017	(주)미성우레탄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077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18	00008692	인천80거2011	이종우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7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119	00008696	인천80너4489	미래종합건설(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079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미가입
120	00008700	인천80더9441	한발토건주식회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8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미가입
121	00008708	인천82다6675	안성환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082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122	00008739	82수1744	김광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84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미가입
123	00004072	02러7098	최만업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85	2010-10-14	보관	주소불명	장기지연가입
124	00004096	05더6396	송준동	407-04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444202687090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25	00004120	08나2199	최은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92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26	00004122	09구5562	최영식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93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27	00004126	09더2087	조은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09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28	00004128	10러5626	고경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095	2010-10-18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29	00004162	18우1890	임복례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687097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30	00004186	25나4969	이건배	405-2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444202687100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31	00004226	26조5688	김성조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10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32	00004234	27누3387	이승택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102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33	00004244	28누9206	김금철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103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34	00004308	42부3712	원용관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05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35	00004312	45거2172	장경섭	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4420268710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36	00004342	52모1275	변영희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10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37	00004446	56머3098	김선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1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38	00004448	58부5383	정현주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112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39	00004516	76소6472	이준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1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40	00004536	85루7708	(주)삼원종합컨설팅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16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141	00004542	86노4609	주식회사 경인육가공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118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42	00004552	86라4008	오세경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12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43	00004556	86머1220	인경원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2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44	00004558	86머1257	김태형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12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45	00004578	86소1689	원용관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28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46	00004608	89다7244	김정훈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13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47	00004626	92노4559	엄재룡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33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48	00004677	인천31거6730	(주)창인전기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134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149	00004693	인천31루2879	권영수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3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50	00004707	인천32마5653	(주)심원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138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151	00004737	인천35다1651	김수나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13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52	00004741	인천35더7811	김재봉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4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53	00004796	인천남동차4519	김성관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4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54	00004814	01무8491	정일훈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46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55	00004830	02마3070	JIN JINGHAO	405-2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44420268714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56	00004836	02우5609	(주)한얼프레스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148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57	00004866	05도7334	김은정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15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58	00004898	12버5023	이고은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152	2010-10-14	보관	주소불명	장기지연가입
159	00004900	12저1598	이상현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153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60	00004914	16노1489	김성신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15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61	00004922	22거1560	전정순외1인(최영남)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56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62	00004928	24더2716	김순정	429-020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144420268715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63	00004956	26구1240	최선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5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64	00004960	26너1288	신동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5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65	00004978	27루9007	한윤호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6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66	00005008	32무2220	정현상	150-0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44202687162	2010-10-15	보관	수취인부재	장기지연가입
167	00005070	39어4088	박양순	405-2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444202687164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68	00005086	45모5314	김형식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16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69	00005102	48마1483	노한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6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70	00005130	52오7897	송영태외1인(송효섭)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70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71	00005206	54버7184	김중서외1(박경학)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7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72	00005208	55러4100	유종명	405-2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44420268717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73	00005238	63수5965	전병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73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74	00005246	66라7577	유종학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74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75	00005334	75서4402	조복동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77	2010-10-14	보관	주소불명	장기지연가입
176	00005358	82다1577	김광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78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77	00005402	86보9039	선흥토건(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84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178	00005412	86소2670	부성산업설비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185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79	00005424	86소7128	장기룡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8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80	00005446	93두9244	유재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8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81	00005448	94다1861	구정숙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8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82	00005497	인천31무6469	협성전기건설(주)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191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183	00005505	인천32가3909	정동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92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84	00005511	인천32라3033	유문수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7193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85	00005519	인천32머3274	임경옥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194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86	00005525	인천33노9614	(의법)의연의료재단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195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87	00005533	인천33러4561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96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88	00005567	인천72가4110	서명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198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89	00005569	인천73노4048	김정기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19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90	00005571	인천73노7688	김병방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0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91	00005577	인천80라1227	정영준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0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92	00005623	인천남동차2872	윤영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05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93	00005651	01러7299	최영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06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194	00005661	01주9803	미래관광(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08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195	00005667	03소3038	송지연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1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96	00005691	07루3254	임형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1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97	00005693	07모7568	한완열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1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98	00005721	13주2931	이영진외1(지순이)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1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199	00005745	21버6375	허대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17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00	00005751	24도2809	이봉원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18	2010-10-18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01	00005763	25나6283	한광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19	2010-10-15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02	00005767	25조7503	이대성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20	2010-10-15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03	00005777	26누1379	박용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21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04	00005781	26루5851	박은경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2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05	00005841	35보3448	장정옥외1인(함향도)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2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06	00005857	37수1486	고석영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2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07	00005867	40라2778	전오룡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228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08	00005871	41서4103	김광훈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722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09	00005903	51라7380	이상목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31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10	00005905	52모9742	성하용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3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11	00005945	56라4829	원창호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33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12	00005947	56라3621	(주)삼원종합컨설팅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34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213	00005961	58서8874	김종선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68723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14	00005969	61모9357	이문호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3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15	00006019	70조1876	김득수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3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16	00006023	73구5200	박정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4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17	00006067	86노7333	김종석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24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18	00006077	86라1656	최경섭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43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19	00006093	86보7242	최병술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4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20	00006107	86소5227	하나이티에프(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46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221	00006109	86소5290	하나이티에프(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47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222	00006131	91다5115	윤명숙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248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23	00006178	인천32라9063	박제진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5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24	00006190	인천33누2901	김흥선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5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25	00006235	인천80나1828	이점동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57	2010-10-15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26	00006241	인천80더6607	허대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58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27	00006257	인천83나3738	김종석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26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28	00006322	02더8950	김종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63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29	00006324	02아5693	전진선	405-2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44420268726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30	00006334	04더4038	봉상윤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6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31	00006336	04러6092	(주)일토종합건설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66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32	00006338	04무9294	정종선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6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33	00006346	05보6672	AHMEDOV MUSLIMJON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269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234	00006350	06서6747	허남기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70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35	00006384	12마1814	문건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7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36	00006386	12저1892	노태범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273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37	00006400	16노1415	김금자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75	2010-10-18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38	00006402	16오9848	황경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7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39	00006404	17너4725	김태곤	403-01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44420268727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40	00006416	20부2541	지영호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7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41	00006418	20부3040	방영수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79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42	00006426	25나4103	(주)성림이루넬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7280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43	00006456	26조8087	(주)진아기계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283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244	00006486	30다2398	김한중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68728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45	00006532	34거5119	임상훈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8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46	00006612	42우4764	장향숙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87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47	00006614	43다3063	이민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88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48	00006624	45모7955	김장운	158-07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44420268728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49	00006716	53구1226	김수원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9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50	00006800	73노1321	김재덕	459-120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1444202687294	2010-10-15	보관	수취인부재	장기지연가입
251	00006818	73우4291	이병선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295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52	00006826	75조1989	염아람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296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53	00006834	80저5150	임홍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97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54	00006838	81수7094	(주)삼원종합컨설팅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298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255	00006860	86러5147	김동욱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29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56	00006894	87가3866	성영호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301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57	00006953	인천31구9876	박은선	607-1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44420268730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58	00006969	인천31모4003	김동찬	135-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444202687303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59	00006975	인천32가8578	박상호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30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60	00006983	인천32거8119	박인수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30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61	00006987	인천32너5211	한국베셀(주)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307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262	00007004	인천33더9521	이희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30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63	00007014	인천34도7163	이재명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309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64	00007022	인천35노1944	김영조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310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65	00007053	인천80라7749	김아국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313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66	00007055	인천80러3335	신안공영(주)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31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67	00007061	인천81라2521	김영조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316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68	00007067	인천81라7710	한국신소재파렛트 주식회사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317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269	00007089	인천84바2000	김윤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19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70	00007115	인천남동차2871	김하이준	336-88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1444202687322	2010-10-20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71	00007134	03거1563	정한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32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72	00007188	12구5607	안이숙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26	2010-10-18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73	00007192	12마5732	백홍준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32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74	00007194	13고6373	안효준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328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75	00007230	24더4446	BOLD BATDORJ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331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76	00007252	26누1430	유순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332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77	00007310	34소7549	(주)삼정건축사사무소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333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278	00007324	37누7079	주기웅 외1인 김명순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33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79	00007356	38다9178	정성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3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80	00007460	49고5214	상탑다이아테크(주)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343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81	00007476	52도4744	김태용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346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82	00007480	52무1309	안순희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34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83	00007486	52오7282	(주)유영종합건설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48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84	00007554	64보5485	민성호	403-1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144420268735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85	00007594	73부7611	김상운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35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86	00007654	86러4720	여일엔지니어링(주)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353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287	00007692	86오1338	조탁근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35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88	00007694	86오1802	김만성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35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89	00007708	89다5493	윤일남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35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90	00007730	인천30도7829	노명란	429-440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444202687358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91	00007732	인천30두3940	이귀자	405-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44202687359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92	00007748	인천31너9821	강옥분	405-2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44420268736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93	00007794	인천33나2523	김종효	153-0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444202687365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94	00007857	인천80너9745	강영국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6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95	00007863	인천80러4831	(주)에스엠인더스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4202687370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296	00007869	인천80러8544	손기봉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371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297	00007918	인천남동차4550	최석주	133-05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1444202687372	2010-10-16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98	00007923	인천남동차4654	문병길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373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299	00007941	인천서자1546	김진철	429-440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444202687374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300	00007972	05마3558	고종숙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37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01	00007984	06더2204	강선구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37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02	00008006	09노6994	김정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79	2010-10-20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03	00008016	09서4216	최막래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8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04	00008028	12러5394	김민자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383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305	00008122	25나4801	이동순	402-080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444202687388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306	00008134	25조2387	정대경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38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07	00008138	25조7888	전강원	403-01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444202687390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308	00008148	26누2609	김덕영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91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09	00008180	32거4228	윤종연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94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310	00008236	39무5791	조동균외1인(조성일)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96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11	00008256	42다3301	경미정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397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12	00008260	43오9916	박진혁	412-270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화정동	1444202687398	2010-10-15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313	00008346	54러1790	이미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399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314	00008368	59소3404	박종옥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400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315	00008402	65더5853	조영식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403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16	00008408	68라9078	손상호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40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17	00008412	70고2708	송학경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406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318	00008469	84수2645	박명희	426-18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1444202687408	2010-10-15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19	00008473	86노1607	지규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40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20	00008491	86러3281	서성훈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410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21	00008503	86부6133	장화순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44420268741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22	00008505	86부6372	박상철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413	2010-10-15	배달	경비원수령	장기지연가입
323	00008511	86소4915	김정원	40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4420268741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24	00008543	91가8175	유상근	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44202687418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25	00008545	91부7824	윤희수	405-2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444202687419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26	00008621	인천32너9218	홍성환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4202687422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27	00008631	인천33더8361	박종희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424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28	00008633	인천33두8358	윤영호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42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29	00008635	인천33라8435	연성찬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426	2010-10-14	보관	이사불명	장기지연가입
330	00008647	인천34로3280	임상용	576-020	전라북도 김제시 신평동	1444202687427	2010-10-15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31	00008706	인천82다5564	류길원	423-030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444202687433	2010-10-18	보관	수취인부재	장기지연가입
332	00008722	인천86바9809	안신원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434	2010-10-19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33	00008726	인천남동자7906	김용진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44202687435	2010-10-18	보관중	폐문부재	장기지연가입
334	00008738	인천부평마5121	윤영한	405-2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4202687436	2010-10-14	보관	수취인불명	장기지연가입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360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0. 2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다양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지원 근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제명 개정
- 법제처 기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및 표기
-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미술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남동구청 ☎ 453-2134, FAX 453-21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조례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다양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지원 근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제명 개정
- 법제처 기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및 표기
-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안 제4장)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미술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장)
-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장)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이하 “행사”라 한다) 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문화예술단체 또는 전문문화예술인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구의원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실비보상)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5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다만,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계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산업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기금 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1. 개인은 남동구 거주 2년 이상(공고일 기준) 이면서 등단분야(중복등단인정)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는 활동 회원 수 2/3 이상이 남동구에 거주하면서(공고일 기준)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제19조(기금 운용 · 계획) ① 기금의 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은 안정성 및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 수익금 등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 적립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제21조(기금위원회의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제17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관계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3.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금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의 감정 또는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과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미술장식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6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6조 각 호의 결과를 합산한 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31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2조(비밀준수) 심의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4조(실비보상)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① 구청장은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구청장의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영 제12조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술장식품의 관리대장 작성,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미술장식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영 제12조제5항의 별표2의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주택 : 1,000분의 1 이상
- ②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6장 미술품 구입 및 관리

제38조(미술품 구입)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 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사진·서예 등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39조 (구입미술품 전시·관리) 구입 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전시 및 대여 할 수 있다.

제7장 축제 지원

제40조(축제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 발전 및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축제운영)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개최(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축제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남동구문화원장, 남동구문화예술회장과 지역 단위에서 축제 특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관광·축제운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그 밖에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동구문화원장과 남동구문화예술회장 등 임기가 있는 자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실비보상) 축제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 받은 수탁운영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평가 및 결산)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36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25호선, 소3-2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중2-25호선, 소3-23호선, 사업명: 구월동 중2-25호선, 소3-23호선 도로확장공사】 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설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2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1-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중2-25호선, 소3-23호선)
- (2) 명 칭 : 구월동 중2-25호선, 소3-23호선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중로 2-25호선 : B=3m, L=63m
- 소로 3-23호선 : B=1m~4m, L=11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이사장 이길여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11.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8.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36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경신지구 소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경신지구 소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는 경우 남동구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용재결과 관련된 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 10. 2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로(소3-1호선)

2) 명 칭 : 경신지구 소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위치 및 개요

- 소3-1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28-7번지 일원(폭원(B)=6m,연장(L)=474m)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0. 10. 22. ~ 2010. 11. 6.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453-2714)

6. 사업자 제시액 조서 : “붙임참조”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토지)

사업명 :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공부	실제	공부	편입	경일감정	나라감정	가온감정					
1	수산동	54-1	도		3	3	813,000	828,000	867,000	836,000	윤두섭			
	소계									836,000				
2	수산동	54-7	도		16	16	4,336,000	4,416,000	4,624,000	4,458,660				
	소계									4,458,660				
3	수산동	50-13	대	도	22	22	8,294,000	8,448,000	8,712,000	8,484,670	장석환			
	소계									8,484,670				
4	수산동	50-7	도		20	20	7,540,000	7,680,000	7,920,000	7,713,330				
	소계									7,713,330				
5	수산동	67-33	대		5	5	4,865,000	4,865,000	4,865,000	4,865,000	박남식			
	소계									4,865,000				
6	수산동	68-4	대		4	4	3,892,000	3,892,000	3,892,000	3,892,000	김옥행			
	소계									3,892,000				
	계									30,249,660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물건)

사업명 :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수량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경일감정	나라감정	가온감정			
1	수산동	68-4	담장	적벽돌담장	L=4.5m	740,000	720,000	765000	741,660	김옥행	
			매실나무	수령2년이상	3주	180,000	180,000	150000	170,000		
	소계								911,660		
2	수산동	68-33	담장	적벽돌담장	L=3.2m	525,000	512,000	544000	527,000	박남식	
			대문	STS대문	1식	1,350,000	1,270,000	1350000	1,323,330		
	소계							1,850,330			
3	수산동	67-32	전력계량기	4식		330,000	310,000	300000	313,330		
			담장	적벽돌담장	L=7.2m	1,180,000	1,152,000	1224000	1,185,330		
			부뚜막	시멘트벽돌		250,000	240,000	250000	246,670		
			바닥포장	콘크리트	15㎡	240,000	225,000	225000	230,000		
	소계								1,975,330		
4	수산동	67-28	앵두나무	수령7년	2주	810,000	800,000	800000	803,330		
			라일락	수령10년	2주						
			대추나무	수령12년	1주						
			단풍나무	수령12년	1주						
			엄나무	수령12년	1주						
			벗나무		1주						
			화단	시멘트8*1.2+1*2	1식	240,000	232,000	250000	240,670		
	소계								1,044,000		
	계								5,781,32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0-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 10. 2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수도)의 결정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555	대3-21호선	소3-8호선	일반 도로		2006. 6.5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555	대3-21호선	소3-8호선	일반 도로			일부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215	소2-1호선	소3-1호선	일반 도로		2006. 6.5	
변경	소로	3	12	6	국지 도로	215	소2-1호선	소3-1호선	일반 도로			일부 선형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호선	소로3-1호선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 당초(3,232㎡) 변경(3,256㎡) 증(24㎡)	소3-1호선과 접한 소3-12호선 교차로 구간 (도림동 산16-1번지)이 불합리한 선형으로 인하여 회전반경 및 시야확보 불량으로 교통소통에 원할치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가각부 선형변경코자 함.
소로3-12호선	소로3-12호선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 감(1㎡)	소3-1호선 선형변경시 연계하여 일부구간 가각부 정리를 위한 도로선형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하수도	운연동 402번지	운연동 443번지	-	203m	517㎡	2010.9.17	
변경	-	하수도	운연동 402번지	운연동 402번지	-	203m	517㎡	-	일부 선형 변경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하수도	- 도시계획선(하수도 선형) 일부 변경 - 면적 : 당초(517㎡) 변경(517㎡)	운연동 402번지 일원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 민원발생으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선형변경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